

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경기도지사(건축디자인과장)

(경유)

제목 관원 질의(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)에 대한 회신

1. 경기도 건축디자인과-23471(2021.10.29.)호 관련입니다.

2. 질의 요지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0조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,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 시·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한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

3. 답변 내용

우리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, 건축신고,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시키고 있는 현장조사 등의 업무대행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개정(2021.1.8.)한 바 있습니다.

동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·도지사는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·관리하고, 허가권자는 해당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다만,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질의하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거나 시·도지사가 작성한 명부에서 건축사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임을 회신합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주무관 사무관승진예 전결 2021. 12. 13.
 전광웅 정자 **이남일** 건축정책과장 **이진철**

협조자

시행 건축정책과-12789 (2021. 12. 13.) 접수 건축디자인과-26693 (2021. 12. 13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국토교통부 6동 418호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4752 팩스번호 044-201-5574 / woong20@molit.go.kr / 비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